

공

고

●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111호

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6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대상 : (주)루트

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4. 의견제출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의견제출장소 :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(☎ 062-457-1595/ FAX 062-457-1598 / E-mail :ryn0219@korea.kr

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

번호	대상자	주민등록번호/ 법인등록번호	고지주소	법령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서비스 제공 사이트	위반 내용
1	(주)루트	200111 - 0684170	광주광역시 북구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4항	3,000,000	rootsms.kr	스팸전송 역무제공제한 위반